소방청 공고 제2023-67호

-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
체력시험 일정·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의 일정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소 방 청 장

Ⅰ. 체력시험 일정 및 장소

가. 전국 시·도별 일정 및 시험장소

연번	시 도	시험기간	등록시간(응시자 해당 시험일)	시험장소
1	중앙	'23.4.21.(금)	13:00~13:30	중앙소방학교(공주) 실내체육관
2	서울	'23.4.18.(화)~4.21.(금)	08:20~09:00	서울소방학교 실내훈련장 및 야외
3	부산	'23.4.25.(화)~4.27.(목)	(오전) 08:00~08:40 (오후) 13:00~13:40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4	대구	'23.4.29.(토)	(오전) 08:00~08:30 (오후) 13:00~13:30	대구체육고등학교 필승관
5	인천	'23.4.25.(화)~4.27.(목)	08:00~08:30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체육관
6	광주	'23.4.25(화)~4.26.(수)	(오전) 08:30~09:00 (오후) 13:00~13:30	동림 다목적체육관
7	대전	'23.4.19.(수)	08:30~09:00	한밭종합운동장 한밭체육관
8	울산	'23.4.20.(목)	08:30~09:00	울주군민체육관
9	세종	'23.4.19.(수)	09:50~10:10	세종시민체육관
10	경기	'23.4.18.(화)~4.26.(수)	(오전) 08:20~09:00 (오후) 13:00~13:40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
11	강원	'23.4.20.(목)~4.21.(금)	(오전) 08:30~09:00 (오후) 14:30~15:00	춘천 호반체육관
12	충북	'23.4.25(화)~4.27.(목)	(오전) 08:20~09:00 (오후) 13:20~14:00	내수생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13	충남	'23.4.27.(목)	08:30~09:00	홍주문화체육센터
14	전북	'23.4.25(화)~4.26.(수)	(오전) 08:00~08:30 (오후) 13:00~13:30	김제실내체육관
15	전남	'23.4.20.(목)~4.21.(금)	(오전) 08:00~08:30 (오후) 13:00~13:30	장흥실내체육관
16	경북	'23.4.18.(화)	07:40~08:00	안동체육관
17	경남. 창원	'23.4.25.(화)~4.26.(수)	(오전) 08:20~08:40 (오후) 13:10~13:30	김해체육관
18	제주	'23.5.1.(월)~5.2.(화)	(오전) 08:30~09:00 (오후) 13:00~13:30	조천체육관

※ **첨부파일 2『2023년 전국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장소』를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한 시도 시험장 및 응시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3,066명(공채1,567명, 경채 1,499명)**

다. **시험종목 : 6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라.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상·하의 운동복, 운동화**

※ 신분증 미지참자 체력시험 응시 불가

☑ 유의사항

- **(응시표)** 119고시 누리집에서 출력**(필기시험 응시표와 동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모바일신분증**(정부24 모바일신분증,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한함
- **(운동복)** 측정 센서에 영향을 주는 복장 착용 시 시험실시기관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운동화)** 스파이크 또는 이와 유사한 금속재 등이 부착된 운동화 착용 불가

마.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 공고일시 : 2023. 5. 11.(목) 14:00
- 공고방법 :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 게시

Ⅱ. 도핑테스트

가. 채취일시 : 체력시험 종료 후

나. 채취장소 : **시·도 체력시험 응시장소**(첨부파일2) **확인**

다. 채취대상 : **체력시험 응시자의 5%**를 무작위 선정(소수점 절사, 최소 1명 이상 시행)

라. 채취시료 : 소변 90ml 이상

마. 시료검사 : 시료 채취 후 봉인

바. 검사기관 : KIST 도핑컨트롤센터

사. 동의서 징구 :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채취 동의 서명

아. 이의신청 :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 등 의견제출

Ⅲ.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등 안내

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시험일 및 장소에서 시험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시험일까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지역 시·도 소방본부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시험일까지 격리 중인 모든 응시자는 지정된 별도의 체력시험 장소로 이동하여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라. 확진자 등의 시험응시 절차

자진신고(응시자)		서류제출(응시자)		응시절차 안내(시·도)
응시지역 시·도 소방본부 채용팀 연락처 【붙임1】 참고	⇨	본인 해당되는 서류 제출 본인 체력시험 응시 예정 전일 24:00 까지	⇨	시험일시·장소 및 유의사항 개별 안내(전화)

마. 코로나19 별도시험장 운영 안내

【코로나19 별도시험장 운영 안내】

1. **(대상)** 체력시험 응시자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되며 신청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한 응시자**
   - **❶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자*로 시험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자가격리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시설 내 접촉자
   - **❷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
2. **(신청기간)** 본인 체력시험 응시 예정 전일 24:00 까지
   ※ 본인 체력시험 응시 예정 전일 24:00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체력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단 부득이한 경우 시험운영 등을 고려하여 시험운영본부에서 응시여부를 판단)
3. **(신청방법) 응시지역 시·도 소방본부 유선통보 및 서류 e-메일 제출**
4. **(제출서류)**
   ① (공통)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붙임5-1】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붙임5-2】
   ③ (병원 등 시설 입소 확진자) 시험 응시 가능 의사소견서
   ④ (공통)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또는 PCR/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소견서)

구 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확진(재택치료)	①, ②, ④	·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 별도시험을 신청한 모든 응시자는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응시 가능 **※ 제주지역 거주자 중 타 지역에 응시하였거나 제주 외 지역 거주자 중 제주지역에 응시한 확진자가 신청서 제출 시 별도 안내**
확진(병원·생활치료)	①, ②, ③, ④	
자가격리자	①, ②, ④	
※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 ② 제출 후 향후 ③(해당자), ④ 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안내)** 시험응시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6. **(유의사항)** 확진 및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Ⅳ.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한 시험장소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의 해당시험일 지정된 시간까지 **공고된 장소에서 등록(핸드링 등)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시험일자 및 시험시간은 변경 불가

다.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정으로 합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붙임 3】**

라.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되면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3-2】

바.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아닌 사람은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사. 체력시험 전 또는 실시 중에 응시자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질병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을 연기하거나 추가 시행하지 않습니다.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재시험 시점은 시·도별 시험본부에서 결정합니다.

아. 체력시험 중에는 판정관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부상 등의 사유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부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제외하고 취득한 점수가 인정됩니다.

자. 체력시험 응시 중 바닥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주는 개인보조장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장비 착용 등 시험 유의사항

- 스포츠 테이핑, 상처보호용 밴드만 가능
- 탄산마그네슘 가루, 붕대, 복대 등 보호대 사용 금지**(미제공)**
- **악력, 배근력 종목에서는 시험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반코팅 장갑 사용 가능**
-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장(후드티 등) 및 용모(긴 손톱, 긴 머리)는 시험 운영과정에서 제재 예정
  - 긴 머리는 머리 뒤쪽으로 묶어서 체력측정 기기 등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것
- 물·음료는 개인 지참(물·음료 이외의 다른 액체류 제품은 섭취 금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2항제4호"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에 해당

차.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시험 세부 운영 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합니다.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카.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 체력시험 중 촬영되는 동영상은 시험판정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며 응시자에게는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 ▸ 체력시험 촬영 동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의거 시험 종료 후 삭제합니다.
- ▸ 종목별 측정 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종목을 실시한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상 촬영 판독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촬영된 영상으로 판정이 어렵거나, 장비의 고장 등으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 해당 종목 판정관의 최초 판정 결과에 따릅니다.

파. 체력시험 채점에 관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력시험 채점표 유의사항 안내

① **(채점) 전산 판독(이미지 스캔) 결과에 따름**

② 계산된 총점 등 기타 비고란에 볼펜 등으로 기재된 숫자는 판독하지 않음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①항 7호 의거 **채점표를 고의로 수정하는 등**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시험을 정지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응시자) 매 종목 득점 점수를 확인하고 최종 응시자 확인란에 서명해야 함**

※ 응시자는 측정기록점수가 득점 마킹란에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

- 시험종료 후 개인별 점수 ☏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하.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시행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 시험장 물품 파손·훼손 등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내·외부)에서는 흡연이 불가합니다. 시험 중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붙임 1. 시험관련 연락처 및 주소 등 1부.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2-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3.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1부.

3-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

3-2.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부.

3-3. 도핑테스트 동의서 1부.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5. 코로나19 자진신고자 유의사항 안내문 1부.

5-1.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1부.

5-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도 시험용)

5-3.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1부.

5-4.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의 보호자 준수사항 1부.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1부. 끝.

붙임 1 시험관련 연락처 및 주소 등

○ 전화번호 및 주소 **※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는 아래 이메일로 제출**

시 도	전화번호 이메일	주 소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94 jhs6063@korea.kr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http://119gosi.kr)
서울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2-2106-3621~2 ssingrae@seoul.go.kr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https://fire.seoul.go.kr/school)
부산 소방행정과	051-760-3023 lion0715@korea.kr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https://119.busan.go.kr/119examinfo)
대구 소방행정과	053-350-4011 ybh0409@korea.kr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12 (http://www.daegu.go.kr/119)
인천 소방행정과	032-870-3012~4 medic108@korea.kr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https://www.incheon.go.kr/119/index)
광주 소방행정과	062-613-8022 sky2898@korea.kr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https://www.gwangju.go.kr/)
대전 소방행정과	042-270-6193 dcorea@korea.kr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19층 (https://www.daejeon.go.kr/dj119)
울산 소방행정과	052-229-4523 sfscuba32@korea.kr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2별관 3층 소방행정과 (https://fire.ulsan.go.kr/)
세종 소방행정과	044-300-8013 bloodkang@korea.kr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618호 (https://www.sejong.go.kr/fire/index.do)
경기도 인재선발팀	031-329-0321~7 bbankar@korea.kr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11번길 42 (https://119.gg.go.kr/)
강원 소방행정과	033-249-5104, 5114 ehdbs24@korea.kr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신관1층 (https://fire.gwd.go.kr/fire/partici/parti_recruitment)
충북 소방행정과	043-220-4823 lovesenda@korea.kr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7 (https://www.chungbuk.go.kr)
충남 소방행정과	041-635-5513 beerthree81@korea.kr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www.cn119.go.kr/index.cn119)
전북 소방행정과	063-280-3842 shyguy963@korea.kr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16층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 (http://www.sobang.kr/index.sko)
전남 소방교육과	061-860-4726 kms399@korea.kr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212-43 (https://www.jnsobang.go.kr/jnsobang/commu/test/)
경북 소방행정과	054-880-6152 babyjj@korea.kr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exam_info/index.html)
경남 소방행정과	055-211-5325 litaixi@korea.kr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
제주 소방정책과	064-710-3514 imsuni@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9길 22 (http://www.jeju.go.kr/119/notice/exam.htm)
창원 소방정책과	055-548-9313 doctor190@korea.kr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https://www.changwon.go.kr/119/)

붙임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이상
	여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여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남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여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남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여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붙임2-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정방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 측정 장비: 배근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정방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cm ○ 측정 방법: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회 ○ 측정 방법: 양발을 3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별도 ○ 측정 기록: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 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 3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안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붙임 3-1)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응시대상의 5%에서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90㎖)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 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 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 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붙임3-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금지약물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1)]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Clenbuterol

2. 이뇨제: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총 11종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pentazocine
- pethidine

□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남 □ 여 □
생 년 월 일		응 시 번 호	
휴 대 전 화		전 자 우 편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처방전,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 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 명		전 공 분 야	
주 소		이 메 일	
전 화		팩 스	
서 명		날 짜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_____**날짜**:_____

부모/보호자 서명:_____**날짜**: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도핑테스트 동의서

■ 응시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응 시 번 호		연 락 처	

본인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붙임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붙임 5 코로나19 자진신고자 유의사항 안내문

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자진신고시스템 안내문에 따라 본인 체력시험 전일 응시 예정 24:00까지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시스템에 의한 자진신고 해당자 】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자*로 시험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자가격리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시설 내 접촉자

②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

나. 응시절차

자진신고(응시자)		서류제출(응시자)		응시절차 안내(시·도)
응시지역 시·도 소방본부 채용팀	⇨	**본인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시험일시·장소 및 유의사항**
연락처 참고		**본인 체력시험 응시 예정 전일 24:00 까지**		**개별 안내(전화)**

다. 응시자는 KF94 성능 이상의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코와 입 막음)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마.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를 권장합니다.

바. 기침, 발열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운영요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 내 다른 응시자와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고 다른 응시자와 2m 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7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하여 증상 발생 시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시험주관부서(붙임 1),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또는 인근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응시자를 제외한 외부인은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붙임 5-1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응 시 번 호	
현 주소지			
격리 기간		관할 보건소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청사유			

□ 제출 서류

※ 서류 제출현황 (제출시 □에 'V' 체크)

①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 (공통)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공통)

③ 의사 소견서(병원입원 등 입소 확진자) □ (해당자)

④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또는 PCR/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소견서) □ (공통)

구 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확진(재택치료)	①, ②, ④	1.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확진(병원 등)	①, ②, ③, ④	**2. 별도시험을 신청한 모든 응시자는 소방청 및 시·도소방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응시 가능**
자가격리자	①, ②, ④	**※ 제주지역 거주자 중 타 지역에 응시하였거나 제주 외 지역 거주자 중 제주지역에 응시한 확진자가 신청서 제출 시 별도 안내**
※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 ② 서류 제출 후 향후 ③(해당자), ④ 제출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붙임 5-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도 시험용)

확진 · 자가격리자 · 밀접접촉자의 시험응시 여부 확인을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전화,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질병관리청, 관할 보건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응시자 확진·자가격리 여부 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시험운영 목적 달성시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기본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취급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 책 임 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붙임 5-3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 준수사항

-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며, 외출하는 동안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이동 시 개인(가족) 차량으로 이동해주시고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합니다.
- 가족 차량으로 이동 시 보호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해주세요.
  -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내부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 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
- 시험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시험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합니다.
- 시험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붙임 5-4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의 보호자 준수사항

- 차량 탑승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씻도록 합니다.
- 식사가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 시험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자가격리대상자가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은 소독을 합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집)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합니다.

붙임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나.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응시자 협조 사항

○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시험장에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다른 응시자와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응시자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 주최기관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체온측정 등)에 협조바랍니다.

-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